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

2022. 09. 20.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22. 7. 6. 이승복 의원 외 74명 공동발의 (2022. 7. 11. 회부)

2. 제안이유

○ 현재 비주택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경제·사회적인 문제로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보증금과 이주비 지원을 통해 거주희망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함.

3. 주요내용

○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이주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7조제12호 신설)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주거복지사업) 시장은 다음	제7조(주거복지사업)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	
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	

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~ 11. (생 략) <신 설>

12. (생략)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·정착지원

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¹)」(이하 '조례')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에 '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입주·정착지원'을 추가하고자 이승복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7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주거복지사업은 총 12가지로서 이 가운데 고 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사업으로는 소방시설²⁾의 설치 지원사업만이 명시되어 있음(조례 제7조제10호).

〈「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」제7조. 주거복지사업 목록〉

제7조(주거복지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1.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
- 2.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
- 3.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

^{1) 「}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」 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주거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
제2조 (주거권) 서울시민은 누구나 물리적·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「주거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4.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
- 5.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
- 6.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
- 7. 장애인 ·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
- 8. 주거복지 관련 단체 기관 지원사업
- 9.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·조사사업

10.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<신설 2019.9.26.>

- 11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,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 <신설 2021.9.30.>
- 12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고시원 및 쪽방으로 대표되는 비주택거주자의 주거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 으로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 는 것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됨. 다만, 금년 8월 태풍 힌 남노와 함께 발생한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, 개 정조문의 지원대상에 반지하주택 거주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음.
- '20년말 기준 서울시내 고시원은 총 5,840개소로 218,886가구('20년 기준)가 거주하고 있으며, 쪽방촌은 작년 말 기준 5개 지역에 총 2,483명이 거주('21년 12월말 기준)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.

〈서울시내 고시원 운영실태〉

(`20년 2월 기준)

총 고시원 방수	고시원 운영실태 현황						
(실 거주가구)	평균 방수	공실	창문없는 방	지하위치 방	7㎡미만 방	월 30만원 미만 방	
218,866 (155,379)	37.69실	10.93실 (29.0%)	14.55실 (38.6%)	0.70실 (1.9%)	21.74실 (57.7%)	16.08실 (42.7%)	

※ 출처: 주택정책과(2020), 「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」, 인용

^{2) 「}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(소방시설), 별표 1

⁻ 소방시설 : 소화설비(소화기, 스프링클러 등)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소화활동설비

	열집지역쪽 방 건물수 (동)쪽방수 (개)쪽방거주자(명) 계		거주자(명	별)	기초생활	65세이상	장애인			
구 분					계	남	여	수급자 (명)	홀몸노인 (명)	(명)
	합	계	282	3,516	2,483	2,141	342	1,503	925	276
돈의동	종로구	돈 의 동	84	730	523	488	35	335	156	76
창신동	종로구	창 신 동	43	374	221	182	39	134	107	21
		소 계	23	614	426	370	56	250	185	21
		남대문경찰서 뒤	12	356	248	216	32	157	106	8
남대문	중구	연세빌딩 뒤	2	43	32	26	6	18	12	1
		회 현 동	2	78	33	30	3	15	16	1
		중림동	7	137	113	98	15	60	51	11
		소 계	65	1,267	880	776	104	519	301	100
11.0.61	9 21.7	동 자 동	61	1,170	848	755	93	506	288	98
서울역	용산구	갈 월 동	2	80	26	17	9	9	10	2
		후 암 동	2	17	6	4	2	4	3	0
		소 계	67	531	433	325	108	265	176	58
W E M	영등포	영등포동	44	414	342	259	83	211	127	50
영등포	구	영등포본동	3	17	15	9	6	6	9	2
		문 래 동	20	100	76	57	19	48	40	6

[※] 출처: 주택정책실 내부자료

○ 통계청에 따르면, 전국 비주택 거주 109만가구 중 30만가구(27%)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³), 2020년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조사 결과, 서울응답가구의 72.8%는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⁴)5).

구 분	계	서울	경기	인천	기타 광역시	기타 시도
응답가구수	8,875	3,928	1,554	406	1,870	1,117
이주희망가구	6,359	2,861	1,131	283	1,432	652
희 망 비 율	71.7%	72.8%	72.8%	69.7%	76.6%	58.4%

※ 자료 : 쪽방, 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(국토부 보도자료, 2020.4.9.)

○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'**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**

³⁾ 전국 비주택거주 1,089,321가구 중 298,989가구(27.4%)가 서울시에 있음(2020년 통계청 자료)

⁴⁾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고시원, 쪽방,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·조사(기간: '19.12월~'20.2월)

⁵⁾ 참고로 일반기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비율은 35.6%임(2020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, 국토부)

사업⁶⁾'을 추진하여, 쪽방·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거주자에 대한 주거상담,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, 긴급임시주택 지원, 보증금, 이사비, 생필품 지 원, 재정착 지원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있음.

〈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개요〉

- (사업내용)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·정착지원
 - 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, 방문상담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
 - ③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
- (시행기관) SH 주거안심종합센터 대행
- (사업대상)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,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- 그러나 이 사업은 LH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동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11개 자치구7)만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는 한계가 있었기에 서울시는 '22년에 대상지역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한편, SH임대주택 입주, 이사비,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'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8)'을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.
 - ※ 참고: **붙임**2.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개요 및 절차, **붙임**3. 주거취약계층 주거상 향지원 사업 주체별 비교
- 한편, 국토부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⁹)」에서는 주거상 향사업 지원대상으로 비주택 거주자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자(3개월 이상) 도 규정¹⁰⁾하고 있는데,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가구의

⁶⁾ 국토부 한시사업('20~22년)으로 향후 사업 지속여부는 미정

⁷⁾ 기초형 2개소(강남구, 양천구), 광역형 9개소(중구, 용산구, 동작구, 관악구, 구로구, 성북구, 광진구, 노원구, 금천구)

⁸⁾ 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보증금 100만원, 이사비 20만원, 생필품지원 30만원을 계획중임

⁹⁾ 국토교통부훈령 제1361호, 2021.1.22.

¹⁰⁾ 건축법령에서 반지하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,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에는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시장 등이 홍수,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5호*</u>

5% 수준인 약 20만호가 지하·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.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.

〈서울시내 유형별 주택 현황(2020, 통계청)〉

(단위: 호)

가구유형	전 체	지 상	지하·반지하	옥상(옥탑)
가구 수(가구)	3,982,290	3,750,423	200,849	31,018

-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침수로 반지하 거주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지하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실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서울시는 '지하・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'을 발표11)하였고, 반지하 거주가구의 임대주택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'특정 바우처'(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) 신설 계획 등을 밝힌 바 있어, 관련 정책을 안정적·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금번 조례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.
- 아울러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 및 반지하 거주를 원하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- 종합하면, 개정안에 따라 '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임대 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·정착지원사업'을 주거복지사업에 포함시킬 경 우, 현재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'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 업'에 대한 시행근거가 조례에 마련됨과 동시에 '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 거상향사업'의 지속적인 추진 및 안정적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

에 따른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.

^{* &}quot;지하층" 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.

¹¹⁾ 서울시, 시민 안전 위협하는 '반지하 주택' 없애 나간다(서울시 보도자료, '22.8.10.)

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집중호우 시 반지하 거주가구의 인 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지하 거주가구도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 주·정착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수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주거복지사업) 시장은	제7조(주거복지사업)	제7조(주거복지사업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
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		
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		
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내에		
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	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2.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</u>	<u>12.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</u>
	택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	<u>택 거주자 및 반지하 거주</u>
	<u>택 우선 공급 및 입주·정</u>	<u>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</u>
	<u>착지원</u>	<u>공급 및 입주·정착지원</u>
<u>12.</u> (생 략)	<u>13.</u> (현행 제12호와 같음)	<u>13.</u>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담 당 자	주 택 공 간 위 원 회 입법조사관 최지현
연 락 처	02-2180-8216
이 메일	cjh1786@seoul.go.kr

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



※ 자료 : 쪽방, 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(국토부 보도자료, 2020.4.9.)

붙임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개요 및 절차

□ 사업개요

- (근거법령)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- (지원대상)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 시설, 컨테이너, 음막, PC·만화방, 침수우려 지하충 등 3개월이상 거주자 등
 - (자격요건) ①무주택세대구성원,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(1인가구 기준),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(총자산 2억 1,500만원, 자동차 3,496만 원 이하)
- (지원방법) 궁궁임대주택(주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) 우선 입주권 부여

□ 사업내용

- 지원절차
 - 지방자치단체 신청 :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신청, 시·군·구에서 입주대상자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, 계약체결(상시신청, 즉시지원)

〈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·지원절차도〉

상담 및 발굴		신청		선정
· 주거상담, 정보제공 · 대상자 발굴 주거안심종합센터	→	동주민센터에 공공주택 입주신청 신청자	→	소득·재산 조회선정결과 SH 통보자치구
주택공급		보증금 지원		입주 및 정착지원
· 매입임대 공개 및 계약 · 계약내용 서울시·지역센터 통보	→	보증금 지원	→	· 이사비, 생필품 등 입주지원 · 정착 및 자립지원
	ł		t	주거안심종합센터

- (대상주택) 전용 85m² 이하 주택[1인 거주시 50㎡(장애인 등 60㎡) 이하]
- (임대기간) 최초 2년, 재계약시 2년 단위로 9회 가능(최장 20년)
- (임대조건) 임대보증금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등의 목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LH 50만원, SH 100만원으로 책정
 - * 전세임대 지원한도 : 수도권 11천만원, 광역시 8천만원, 기타 6천만원

붙임3

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주체별 비교

□ 사업 주체별

구분	국토부 주거상향지원사업	서울형 주거상향지원사업(안)
지 원 대 상	 비주택(쪽방, 고시원 등) 거주자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%~70%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(자산 215백만원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) 가정폭력 등 긴급한 주거지원을 필요로 지자체장 등이 추전한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	 비주택(쪽방, 고시원 등) 거주자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%~70%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(자산 215백만원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) 가정폭력 등 긴급한 주거지원을 필요로 지자체장 등이 추전한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
지 원 내 용	- 임대주택 공급 : LH 임대주택공급 - 보증금 지원 : 현금지원(주거복지재단 기금) - 이주비 지원 : 이사비, 생필품 등 이주비용 지원 - 정착지원 등	 임대주택 공급 : SH 임대주택 우선공급 보증금 지원 : 보증금 무이자 융자 이주비 지원 : 이사비, 생필품 등 이주비용 지원 정착지원 등
추 진 방 법	- 국토부 사업수행 지자체 공모에 따른 국·시비 매칭사업	- SH 대행
사 업 예 산	- 1,340백만원 · (국비)670백만원, (시비)622백만원, (구비)48백만원 · 매칭비율 : (광역형) 국:시 = 5:5 (기초형) 국:시:구 = 5:2:3	- 2,990백만원(전액 시비) · (보증금 융자) 2,000백만원 (이주비 지원) 990백만원
추 진 계 획	-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지속 추진	-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중(보건복지부) <`22년 9월 현재>